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 정: 2005년 6월 27일
제1차 개정: 2007년 6월 25일
제2차 개정: 2013년 1월 10일
제3차 개정: 2016년 1월 21일
제4차 개정: 2018년 2월 20일
제5차 개정: 2021년 7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부천시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제반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Bucheon Council on Social Welfare로 하고, 약칭은 BCC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에 둔다.
<2021.7월개정>

제4조(사업) 이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부천시 소재 사업복지사업기관 간의 협력 및 협의·조정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3.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9. 도지사 또는 시장, 중앙협의회 또는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10. 사회복지모금활동 및 결연후원 업무
11. 기타 이 회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도협의회와의 관계) 이회는 도협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1. 부천시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및 임직원 <2018.2월개정>
2. 부천시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2018.2월개정>
3. 부천시역의 경제·언론·종교·법조·문화·교육·보건의료·청소년 등의 시설 및 종사자 <2018.2월개정>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제7조(회원의 구분) ① 이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018.2월개정>

② 삭제 <2018.2월개정>

③ 개인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018.2월개정>

④ 단체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2018.2월 신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2018.2월개정>

제9조(회원의 임의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2018.2월개정>

제10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018.2월개정>

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및 복권) ①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018.2월개정>

- ② 이 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자나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 ③ 자격박탈 또는 제명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서 시행하며 이사회는 10일 전에 해당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명된 회원이 미납부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복원하고자 신청할 때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복권할 수 있다. <2018.2월신설>

제12조(회원규정) 회원의 가입·탈퇴와 권리·의무의 행사방법, 회비 또는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회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 회의 직제와 관련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8.2월개정>
- ② 이사는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인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로 구분한다. <2016.1월개정>

-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이 회의 이사장은 회장으로서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2021.7월개정>
- ② 이 회의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 중 1인은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2016.1월개정>
- ③ 부회장은 이사 중 2인을 회장이 지명하되, 부회장의 지명과 해임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13.1월개정>
- ④ 임원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⑤ 정관 제17조 임원의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한다. <2021.7월신설>

-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013.1월개정>
- ② 당연직 이사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단 선출직이사, 감사는 총회를 통해서만 보궐선출을 할 수 있다. <2021.7월개정>
- ③ (삭제) <2013.1월개정>
- ④ 회장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2018.2월개정>
- ⑤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2018.2월신설>

제16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021.7월개정>

제17조(임원의 자격상실 등) ① 임원이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임원의 자격도 정지된다. <2018.2월개정>

② 임원이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2018.2월개정>

③ 부천관내 근무기관을 퇴직하면 임원 자격은 상실한다. <2013.1월개정>

④ 임원이 임원회비 등의 납부의무를 소홀히 한 때는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제17조의 1(임원의 보충) ①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2013.1월신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13.1월개정>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 1(임원의 겸직 금지) ① 삭제 <2018.2월개정>

② 삭제 <2018.2월개정>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취임한다.

제 4 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20조(총회) ①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회원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21.7월개정>
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8. 그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의결권·선거권의 대리행사)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

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8.2월개정>

② 회원은 다른 회원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으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수는 1인에 한한다. <2018.2월개정>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 회에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처 직원 및 위탁기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8.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2개월 마다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때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2021.7월신설>

제31조(서면결의 등) 삭제 <2013.1월개정>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삭제 <2021.7월개정>

- 제33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2021.7월개정>
③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사무처

- 제34조(전문위원회) ① 이 회의 업무를 사회복지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 단, 기관장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2013.1월개정>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둔다. <2018.2월개정>

- 제34의 1조(자문위원회)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7.6월신설>
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둔다. <2018.2월개정>
③ 삭제 <2018.2월개정>
④ 삭제 <2018.2월개정>

- 제35조(사무처)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등 필요한 직원과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통할한다.

제36조(직원)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장, 직원의 임용과 복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37조(자산의 구분) 이 회의 자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8조(자산의 관리) ① 자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련되는 전세권 설정은 이를 완료한 후에 보고 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1.7월개정>

제39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회의 경비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정부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40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회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021.7월개정>

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

제41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3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회계연도 개시 전 1월 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위탁운영 및 수익사업

제45조(위탁운영) ① 이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나 기관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7월개정>

제46조(수익사업) ① 이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7조(정관변경) 이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해산) 이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 구성원 각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9 장 공고방법

제50조(공고의 방법) ① 이회가 법령 및 정관과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회의 게시판 또는 이회의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지방지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1조(준용법규)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2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업무 및 사업과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여왔던 각종 업무와 사업 및 예산은 이 정관에 따라 이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조직도

